



공정위 주요현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6. 17. 제24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 『공정위 주요현안』을 보고하였다.

주요현안은 6개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 추진현황, 시장개혁비전 민관합동 T/F회의 추진현황,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 및 국제협력 강화, 시멘트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조사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 6. 9.~7. 31. 공시이행 점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된 6개 기업집단 소속 20개사(삼성, LG, SK그룹 : 각 5개사, 현대 3개 그룹 : 5개사)를 대상으로 2000. 1. 1.~2002. 12. 31. 기간 동안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자산 등의 부당지원 행위, 상품·용역거래에 있어서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지난 해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시 미공시 한 것으로 드러난 내부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별 시장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광고산업,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력, 은행·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해서는 6, 7월중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적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그룹별 소비자시책에

있어서는 취약 소비자그룹의 소비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개 그룹 8개 업종을 대상으로 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3개 그룹 4개 업종(영세상인-자동판매기, 도시서민-자사브랜드제품, 자가운전자-자동차수리, 자동차대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 3개 그룹 4개 업종(부녀자-여성의류, 먹는샘물, 학생-프린터소모품, 청소년-마일리지카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 법위반 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민관합동 T/F는 기업집단시책과 시장개선시책의 2개 분과로 나누어 지금 까지 2차례 토의를 진행하였다. T/F 작업은 3/4분기까지 마무리하고, 논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된 안을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단기과제는 T/F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내에 법개정을 추진하며, 중장기과제는 향후 일정에 따라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외국기업에게도 우리 법을 적극 적용하여 외국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국내기업과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기준을 마련, 결합 당사회사 중 1개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사 회사들의 국내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상인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03. 7. 1. 시행)하는 등



경쟁법 적용을 국제화할 방침이고, 또한 '03. 9월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경쟁정책 분야 협상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OECD, ICN 등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쟁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등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섯째, 7개 시멘트업체 및 사업자단체(쌍용양회,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및 한국양회공업협회)를 대상으로 레미콘업체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등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 과태료부과기준」제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동 고시의 제정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벌칙 조항에 과태료 부과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유형 및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동 고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을 위반한 ▶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

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한 자 등 불성실 이행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부과금액은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공시규정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 이행행위)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위반 유형을 그 경중을 감안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기종 또는 경감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서 정한 공시기한을



경과하여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중복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씩 가산) 등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자본금의 10% 이상인 내부거래라도 1억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혹은 공시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

과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일괄공시를 한 경우에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 「내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의 전문은 본지의 '부록(47면 이하)' 참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표준약관의 보급 및 사용확대와 표준약관의 허위사용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03. 6. 11.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약관법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만이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고 공정위에 의 심사청구 여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금번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약관법 제19조의2 제2항 신설)하고, 일정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불공정약

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위는 표준약관 보급을 위해 일단 사업자 측에 대하여 관련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할 것을 권고하며(약관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 일정한 유예기간(4개월) 동안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만 공정위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관법 제19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또한 사업자가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 받고도 이와 다른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만 하면 되고(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 신설),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약관법 제34조제2항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표준약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 제도를 약관법에 반영하고,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며(약관법 제19조의2 제7항 내지 제9항 신설), 또한, 표준약관이 아니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약관법 제34조제1항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동 법률 개정으로 동종의 불공정약관이 계속 통용되어 이에 대한 반복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던 분야 및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표준약관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6개 기업집단 소속 20개사에 대해 2003. 6. 9.~7. 31.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98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6개 기업집단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 등을 통하여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다수 인지, 국민경제상 비중이 큰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핵심역량 위주의 독립적인 기업경영 체제를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

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SK(SK, SK텔레콤, SK C&C, SK생명, SK해운),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2000. 1. 1.~2002. 12. 31. 기간 동안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자산 등의 부당지원 및 상품·용역거래에 있어서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지난 해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시 적발된 미공시 건의 부당내부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터넷상거래사업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인터넷상거래사업자의 기만행위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소비자단체와 공정위간의 협력체제 구축, 소비자피해 정보의 공개 확대, 소비자피해 확산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먼저 인터넷상거래사업자의 기만행위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 동일사업자의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불만 신고가 단기간에 20건 이상 접수된 경우 ▶ 다수의 소비자피해·불만 신고가 여러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단기간에 급증하는 등 전국적인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업무처리 경험·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인 피해확산 방지 등 정부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즉각 통

보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구축,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위 사안들을 통보해 올 경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피해의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 피해예방 주의·경보발령제도 도입 등 소비자에게 위험한 거래유형·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정위 사이트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 적극 활용하며,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허위·기망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활용할 계획이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의 추천, 전문가의 보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능·효과나 성능 등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체험이나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경험·체험을 소개하거나,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보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

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지침을 통해 사용 경험이 없는 자의 추천·보증, 전문성이 없는 자의 추천·보증 등을 금지할 예정이며, 동 지침은 공정위 의결을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개혁 제2분과 민관합동 T/F 2차회의 결과

시장개혁 제2분과 민관합동 T/F 2차회의가 2003. 5. 28일 개최되어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의 활성화 및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입증책임분배 등 원고와 피고 간의 형평성, 민법 등 여타 제도와의 조화, 남소 방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활성화 외에 개인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규모기업 취득시 신고의무 면제, 계열사 간 임원겸임 신고 면제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였고,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사전신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신고 시점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3년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6월 2일 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3년 5월중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5. 1. 360

개에서 2003. 6. 2. 현재 361개로 1개사가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2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5. 1. 479개에서 2003. 6. 2. 현재 470개로 9개사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5. 1. 현재 839개에서 2003. 5월중 4개가 신규편입 되고, 12개가 계열제외 되어 2003. 6. 2. 현재 831개로 8개가 감소하였다.

[2003. 5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5. 1.	편 입			제 외					증감	2003. 6.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전 체(49개)	839	2	2	4	1	3	1	7	-	12	△8	83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7개)	360	1	1	2	1	-	-	-	-	1	1	361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32개)	479	1	1	2	-	3	1	7	-	11	△9	470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3. 5월 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4개사(회사설립: 2, 주식취득: 1, 기타: 1)

◆ 제외 : 12개사(합병: 1, 청산종결: 1, 지분매각: 3, 친족분리: 7)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엘 지	오일체인(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기타	-	-	-
현 대 자 동 차	에코에너지(주)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업	회사설립	-	-	-
동국제강	씨제이 미디어라인(주)	음반제작 및 도소매업	회사설립	-	-	-
	(주)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운송업	주식취득			
에스케이	-	-	-	에스케이 아이엠티(주)	정보통신사업	피합병
대 림	-	-	-	(주)서울에프 엔텍파트너스	기타 금융 서비스	지분매각
코 오 롱	-	-	-	티암도메인 코리아(주)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
동 원	-	-	-	(주)동원경제 연구소	투자 및 경영 자문업	청산
부 영	-	-	-	동광 종합토건(주)	토목건축공사업	친족분리
				동광전설(주)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동광토건(주)	기계설비공사업	
				동광기공(주)	제조업	
				(주)동광	창호공사업	
				(주)연홍개발	골프장운영업	
삼 보 컴 퓨 터	-	-	-	동광설비(주)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주)두루넷쇼핑	전자상거래업	지분매각

* 출자총액 ·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엘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공정위 인사

발령

2003. 5. 29.

국무조정실 파견근무를 명함. 서기관 **박원기**
(파견기간 : 2003. 5. 29~2005. 5. 28)

2003. 5. 31.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에 임함. 서동원
(기간 : 2003. 5. 31~2006. 5. 30)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부이사관 **이재구**(하도급국장)
하도급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부이사관 **이동훈**
(기간 : 2003. 5. 31~별도 발령시까지)

2003. 6. 5.

2003년도 국비장기해외훈련계획에 의거 서기관 **김윤수**
미국, U.C. Sandiego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3. 6. 17~2005. 6. 16)

2003. 6. 12.

경쟁국장에 보함. 부이사관 **정재찬**(경쟁국장 직무대리)
위원장실 비서관에 보함. 서기관 **김준범**(위원장실 비서관 직무대리)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에 보함. 서기관 **김종선**(심판관리2담당관 직무대리)
정책국 국제협력과장에 보함. 서기관 **김재중**(국제협력과장 직무대리)
조사국 조사2과장에 보함. 서기관 **박태동**(조사2과장 직무대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서기관 **여형동**(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직무대리)